

● 제28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
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659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9. 5. 23.
- 회부일 : 2019. 5. 30.

II.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1. 세입

- 해당 없음.

2. 세출

-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4,615만 7,000원(0.17%)이 증가한 274억 5,4730만원임.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 구 분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증감액 | 증감률 |
|---------|-------------|------------|------------|--------|------|
| 일 반 회 계 | 계 | 27,454,729 | 27,408,572 | 46,157 | 0.17 |
| | 사 업 비 | 25,995,499 | 25,949,342 | 46,157 | 0.18 |
| | 행 정 운 영 경 비 | 1,459,230 | 1,459,230 | - | 0.00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추경안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 추경안 검토

가. 총괄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74억 857만원) 대비 4,615만 7,000원(0.17%)을 증액해 274억 5,473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259억 4,934만원) 대비 4,615만 7,000원(0.18%)을 증액해 259억 9,545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과 같음.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 구 분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추경안 | | | |
|-------------|------------|------------|-----|---|--------|------|
| | | | 감액 | % | 증액 | % |
| 계 | 27,454,729 | 27,408,572 | - | - | 46,157 | 0.17 |
| 사 업 비 | 25,995,499 | 25,949,342 | - | - | 46,157 | 0.18 |
| 행 정 운 영 경 비 | 1,459,230 | 1,459,230 | - | - | - | - |

나. 사업별 검토

(1) 의정활동수행비

-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비 관련 11가지 경비 중 국내·외 여비를 제외한 9가지¹⁾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93억 946만원) 대비 ‘의장협의체부담금’ 4,615만 7,000원(0.5%)을 증액해 93억 5,562만원을 편성함.

<의정활동수행비 추경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증감액 | 증감사유 |
|---------|-----------|-----------|--------|---|
| 의정활동수행비 | 9,355,615 | 9,309,458 | 46,157 | 【의장협의체부담금】 ◦ 의장협의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총원 및 사업 확대로 각 시·도의회 추가 부담금 지급 - 의장협의체부담금 증46,157천원 (154,046→200,203) • 기본 부담금 14,118천원 • 의원정수 부담금 32,039천원 |

-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에²⁾ 따라 시도의회별 균분액(기본 부담금)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담금(의원정수 부담금) 및 회장이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구성됨.
- 「의장협의회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의장협의회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의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① 의정활동비, ② 월정수당, ③ 의정운영공통경비, ④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⑤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 교육), ⑥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⑦ 의장협의체부담금, ⑧ 의원국민연금부담금, ⑨ 의원국민건강연금부담금

2) 제24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원은 매년 각 시·도의회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다음 년도 1/4분기 중에 납부한다.

③ 제1항의 분담금은 시·도별 균분액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담금 및 회장이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한다.

- 2019년도 제1차 임시회('19.2.21)에서 의장협의회사무처 조직개편³⁾(의사과를 의사1·2과로 분리, 기획홍보과 신설)과 인력충원(7명), 홍보활동 강화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이에 본 추경안은 서울시의회의 의장협의회 추가 부담금(기본 부담금+의원정수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17개 시도의회별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2) 기타사항

-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등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수요 증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요청 증가,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³⁾에 따른 해외비교시찰 사전간담회 개최 및 1일 1기관 방문 의무화 등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의 증액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증액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2018년부터 의장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 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붙임】

2019년 의장협의체 추가 분담금 발생사유 및 산출금액

의장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 근거 : 의장협의회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③ 예산성립 후에 생긴 협의회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규모

(단위 : 천원)

| 2019 추경예산(안) | 2019 당초예산 | 증 감 액 | 증 감 륜(%) |
|--------------|-----------|---------|----------|
| 2,075,202 | 1,595,202 | 480,000 | 30.0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1차 임시회」 안건 의결('19.2.21.)

-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7명) 및 사업확대

- 사무처 인력충원(의사1과 3명, 기획홍보과 4명)에 따른 인건비 등 118,900천원
- 기획홍보과 신설, 광고업무 추진 및 사무공간 추가 확보 등 일반수용비 111,100천원
- 의장단 연찬회(2회), 전국광역의원 합동 전진대회 개최 170,000천원
- 사무처 문서전산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80,000천원

서울시의회 추가 분담금 : 46,157천원

- 산출내역 : 기본분담금 + 의원정수 분담금

- 기본분담금 : 240,006천원 / 17개 시·도 = 14,118천원
- 의원정수 분담금 : 291,254원(239,994천원 / 824명) × 110명 = 32,039천원

2019년 추경 시도의회별 분담금 내역

(단위 : 명, 천원)

| 구 분 | 의원 정수 | 분 담 내 역 | | | 비 고 |
|-----|------------|---------------|---------------|---------------|-----|
| | | 계 | 기 본 | 의원정수 | |
| 계 | 824 | 480,003 | 240,006 | 239,994 | |
| 서울 | 110 | 46,157 | 14,118 | 32,039 | |
| 부산 | 47 | 27,807 | 14,118 | 13,689 | |
| 대구 | 30 | 22,856 | 14,118 | 8,738 | |
| 인천 | 37 | 24,894 | 14,118 | 10,776 | |
| 광주 | 23 | 20,817 | 14,118 | 6,699 | |
| 대전 | 22 | 20,526 | 14,118 | 6,407 | |
| 울산 | 22 | 20,526 | 14,118 | 6,407 | |
| 세종 | 18 | 19,361 | 14,118 | 5,242 | |
| 경기 | 142 | 55,476 | 14,118 | 41,358 | |
| 강원 | 46 | 27,516 | 14,118 | 13,398 | |
| 충북 | 32 | 23,438 | 14,118 | 9,320 | |
| 충남 | 42 | 26,351 | 14,118 | 12,233 | |
| 전북 | 39 | 25,477 | 14,118 | 11,359 | |
| 전남 | 58 | 31,011 | 14,118 | 16,893 | |
| 경북 | 60 | 31,593 | 14,118 | 17,475 | |
| 경남 | 58 | 31,011 | 14,118 | 16,893 | |
| 제주 | 38 | 25,186 | 14,118 | 11,068 | |

※ 산출기초

▶ 기본분담금 50%, 의원정수분담금 50%

- 기본분담금 : 240,006천원 / 17개 시·도 = 14,118천원

- 의원정수 분담금 : 239,994천원 / 824명 = 291,254원(의원1인당) × 시도별 의원정수